

# 주요 익금항목에 대한 이해



**변석준 이사**

델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회계사  
Tel. 02-6676-2490  
sbyun@deloitte.com

| 목차 |                            |
|----|----------------------------|
| 1  | 총설                         |
| 2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 3  | 손익귀속시기 및 자산의 취득가액          |
| 4  | 주요 익금항목에 대한 이해             |
| 5  | 주요 손금항목에 대한 이해             |
| 6  | 자산에 대한 평가 및 고정자산 감가상각      |
| 7  | 접대비와 기부금                   |
| 8  |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
| 9  | 준비금, 지급이자                  |
| 10 | 부당행위계산부인                   |
| 11 | 법인세 계산, 신고 및 납부            |
| 12 | 기타(자본거래와 세무, 연결납세제도의 이해 등) |

이번 호에서는 '주요 익금항목'에서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세법상 익금의 정의 및 대표적인 익금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익금의 개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익금 및 익금 불산입의 유형들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금액의 개략적인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이 법인세법상 익금을 구성한다.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법인이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즉 '사업수입금액'이 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또는 영업수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표시되는 금액이다. 사업수입금액 외에도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인 자산의 양도시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시 평가이익,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자산수증이익,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수익 등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익금에 해당함은 당연히 이해할 것이다.

## 의제배당은 형식상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상 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상기와 같이 당연한 익금의 유형 외에 특수한 익금항목 중 실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유형인 '의제배당'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의제배당(擬制配當)은 형식상 배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식상 배당은 무엇이고, 사실상 배당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형식상 배당이란 주식투자를 하면 연말에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법상 절차인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통하지 않고, 회사의 순자산을 주주들에게 이전시키는 경우를 사실상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의제배당의 유형에는 ① 자본금의 감소·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과 ②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있다.

##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은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해 받은 대가'에서 상기 사유로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먼저 자본금의 감소·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을 살펴보면, 자본금의 감소나 회사가 해산,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할 것이고, 그 대가를 지급한 대신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원인으로 인한 대가의 지급액에서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회사가 매 사업연도 발생한 이익을 그때 그때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했다면 해산 등의 경우 주주가 각자의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받았을 것인데, 매 사업연도 발생한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차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회사가치가 1,000원이고,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면 취득가액은 100원 (=1,000원×10%)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식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이익이 100원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회사가 이익을 전액 배당한다면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익 100원의 10%인 10원을 배당으로 수령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고 해산을 한다면 10%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총가치 1,100원의 10%인 110원을 해산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자돈 100원보다 10원만큼 더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당해 소득 10원에 대해서 배당과 사실상 성격이 동일하므로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금액이다.

다음으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을 살펴보겠다. 회계상 잉여금은 크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의 경우, 원래는 현금배당의 재원이 되어서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현금으로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에게 주식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회계상으로는 회사의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굳이 자본전입해서 주주에게 주식으로 돌려주는 시점에 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과세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해도 동일한 세액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본전입시점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현금배당과 동일한 성격의 금액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다음으로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해서 주주에게 주식으로 돌려주는 경우에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진다. 세법상 이익잉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자본잉여금, 즉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게 된다.

반대로 세법상 이익잉여금과 다른 경우, 즉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sup>1)</sup>.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이 있고, 법인세가 과세된 자본잉여금에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다.

상기와 같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자본전입금액, 즉 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금액으로 한다.

## 대표적 익금불산입항목에는 주식발행초과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자산의 평가이익이 있다.

법에서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유지목적, 이중과세방지, 조세정책적 혜택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1) 단, 이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하나, 당해 기고의 원래 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난해한 주제가 아니고, 실무상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본유지목적의 대표적인 익금불산입항목으로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말하는데, 주식의 액면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실질적인 자본의 납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중과세방지목적의 대표적인 익금불산입항목에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정금액이 있다. 이는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동일한 소득을 ①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배당의 재원이 될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이미 한번 과세했는데, 다시 ②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단계에서 상기 과세된 배당 지급법인의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어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규정된 것이다<sup>2)</sup>.

이러한 조정은 배당금액을 무조건 100% 익금불산입해주는 것은 아니고, 배당금지급법인이 상장법인인지 비상장법인인지 및 투자한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sup>3)</sup>.

| 출자비율              |                   | 조정금액      |
|-------------------|-------------------|-----------|
| 상장                | 비상장               |           |
| 30% 이하            | 50% 이하            | 배당금액의 30% |
| 30% 초과<br>100% 미만 | 50% 초과<br>100% 미만 | 배당금액의 50% |

- .....
- 2) 따라서,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는 이중과세조정을 해줄 대상이 없으므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도 투자기간이 너무 짧은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는다.
- 3) 참고로 상기 조정금액비율은 배당금지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다음과 같다.

| 출자비율             |                       | 조정금액       |
|------------------|-----------------------|------------|
| 상장               | 비상장                   |            |
| 20% 이상<br>40% 이하 | 40%(20%*)이상<br>80% 이하 | 배당금액의 80%  |
| 40% 초과           | 80% 초과                | 배당금액의 100% |
|                  | 100%                  | 배당금액의 100% |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40% 대신 20% 적용.

예를 들면, 상장법인에 지분을 10% 투자해서 1,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조정금액 300원(=1,000원×30%)을 익금불산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이중과세조정이라는 목적 때문에 조정을 해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은 법인의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보유를 규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까지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입금이자 중 주식투자에 사용된 분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금액은 아래에 제시된 산식과 같이 차입금이자 중 평균적으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구해서 상기 조정금액비율(30%, 50% 또는 100%)을 곱해서 산출한다.

|           |   |            |   |                      |
|-----------|---|------------|---|----------------------|
| 차입금<br>이자 | × | 조정금액<br>비율 | × | 조정대상<br>주식가액<br>자산총액 |
|-----------|---|------------|---|----------------------|

마지막으로 자산의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를 익금으로 할 경우 회사 담당자의 자의에 따라 자산의 처분이익의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 ①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이익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이익
- ③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

상기 예외는 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평가하는 경우이거나, 평가를 인정하더라도 평가의 자의성이 회사의 소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평가가 인정되는 것이다. ◀